

2019. 4. 17. 10:00

제271회 달성군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회의

검 토 보 고 서

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달 성 군 의 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개 요

1. 제 출 일 : 2019년 4월 일
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

3. 제안사유

-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나 안전 발생빈도 및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조항의 개정 및 용어 정비 등(제3조제2항)

○ 조항 개정 및 용어정비

-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(1호 내지 10호)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.

→ 위원장은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, 부위원장은交通安全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交通安全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○ 당연직 위원 구성 정정

- 기획예산담당부서장, 교통행정담당부서장, 건설담당부서장, 건축담당부서장 → 달성군 공무원
- 달성소방서 예방안전담당부서장 → 달성소방서 공무원

- 달성경찰서 경비교통담당부서장 → 달성경찰서 공무원
- 달성교육지원청 교통담당부서장 → 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
-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 →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 지부 소속 직원
-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 →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소속 직원

나. 위촉직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신설(제3조의2)

-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.
 1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
 3. 그 밖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·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, 의사·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다.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조항 삭제(제4조)

- 제4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→ 삭제

라. 비상설위원회 전환 임의규정[제6조(회의 등)]

- 제1항 : 개정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→ 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부의한다.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○ 제3항 : 신설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5. 관계법령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, 제17조
-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」 제110조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13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6. 기타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5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9. 3. 6. ~ 3. 26.(20일간)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,

○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

-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, 운영해야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안전 발생빈도 및 회의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함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

- 안 제3조에는 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용어 정비, 성별 구성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
- 안 제3조2항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근거 신설
- 안 제4조에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
- 안 제6조에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비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

○ 위와 같이 “**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”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.

붙임 1) 조례안 1부.

2) 관계법령 1부. 끝.

붙임 1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1. 달성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
 2. 달성군 공무원
 3. 달성소방서 공무원
 4. 달성경찰서 공무원
 5. 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
 6.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 지부 소속 직원
 7.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소속 직원
 8.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
 3. 그 밖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·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, 의사·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을 부의한다.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부의된 안전에 대한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8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군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</u> ----- -----
제2조(기능) <u>위원회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제2조(기능)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- -----
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(1호 내지 10호)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. 1. <u>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(1명)</u> 2. <u>기획예산담당부서장</u> 3. <u>교통행정담당부서장</u> 4. <u>건설담당부서장</u> 5. <u>건축담당부서장</u> 6. <u>달성소방서 예방안전담당부서장</u> 7. <u>달성경찰서 경비교통담당부서장</u> 8. <u>달성교육지원청 교육담당부서장</u> 9. <u>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</u> 10. <u>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</u> 11. <u>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</u>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은 <u>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</u> 1. <u>달성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</u> 2. <u>달성군 공무원</u> 3. <u>달성소방서 공무원</u> 4. <u>달성경찰서 공무원</u> 5. <u>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</u> 6. <u>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직원</u> 7. <u>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소속 직원</u> 8. <u>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u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3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3. 그 밖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·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, 의사·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<삭제>
제6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	제6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부의한다.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수당 등) _____ _____군 공무원_____

□ **교통안전법**

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

-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“지방교통위원회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- ②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

- ① 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시·도 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·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가 시·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군·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교통안전법 시행령**

제8조(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- ②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□ **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**

제110조(지방교통위원회)

-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.
-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**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**

제113조(지방교통위원회 구성·운영)

-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“지방교통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·도의 국장이 된다.
-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군수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
 2.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
-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